

제 415 호
1978.11.19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양택식
편집 : 문화공보실장 김진호
전화 75-7884
인쇄 : 서울특별시청합판간실
전화 75-6090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802 호 : 서울특별시 재개발사업가격평가위원회 운영조례 개정조례	3
제 803 호 : 서울특별시 사유재산조례폐지조례	4
◎ 규 칙	
제 1328 호 : 서울특별시 등장인사규칙개정규칙	4
◎ 공 고	
제 212 호 :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완료공고	6
◎ 사 령	7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조 제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재개발사업 가격평가위원회 운영조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3. 11. 17

서울특별시 시장 양택석

◎ 서울특별시 조례 제 802 호

서울특별시 재개발사업 가격평가위원회
운영조례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재개발사업 가격평가위원회
운영조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 29 조
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재개발
사업 가격평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설치) ①위원회는 서울특별
시에 둔다.

②전항의 위원회는 재개발사업지구별
로 각각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영 제 29 조 제 3 항 제 1 호의
취지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

서 2 이상의 재개발지구내 하나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3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
의한다.

1. 재개발 사업지구 및 복원지구정
비지구내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평가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시장이 부여하는 가격평가와 관
련되는 사항

제 4 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
인이상 1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제 2 부시장이 되며 부
위원장은 도시계획국장이다.

③위원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 29
조 제 3 항 각호제정하 비율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제 5 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의결
장이 소집하고 그 의결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다만 과반수인

<p>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p> <p>제7조(회의록)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p> <p>제8조(수당등의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9조(간사등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명씩을 둔다. ②간사는 도시계획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p> <p>제10조(시행규칙) 이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국무총리의 승인물언은 서울특별시시유재산조례 폐지조례</p> <p style="text-align: center;">1973. 11. 17</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장 양택식</p> <p>◎서울특별시조례제 803호</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시유재산조례 폐지조례</p> <p>서울특별시 조례제 316호(1963.12.24)서울특별시 시유재산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width: fit-content; margin: 10px auto;">규 칙</div> <p>서울특별시시장 인사규칙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73. 11. 17</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 양택식</p> <p>◎서울특별시규칙제 1328호</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시장인사규칙 개정규칙</p> <p>서울특별시시장 인사규칙을 다음과같이 개정한다.</p> <p>제1조(적용) 서울특별시 동맹부는 별정직동장(이하 동장이라한다)의 인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로 규정된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2조(동장의임용및보고) ①동장은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4조의 자격을 갖춘자로서 임용일 현재 30세이상 45세 미만인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②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장을 다른 품으로 전보할 수 있다. ③구청장이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을 임명하거나 전보할 때에는</p>
--	---

<p>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 3 조 (결격 사유)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 31 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는 동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p> <p>제 4 조 (신원보증) 구청장은 동장을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신원보증법에 의한 신원보증을 받아야 한다.</p> <p>제 5 조 (당연 퇴직) 동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55세에 달하였을 때 2.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3 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3. 법제 31 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p>제 6 조 (직권면직) ① 동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구청장은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체 및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행정구역의 폐지, 분할 또는 정원의 개편으로 인하여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4. 주민의 신망을 잃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을 때 5. 동행정실적심사 결과 그설정이 	<p>극히 불량한 때</p> <p>6. 동행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p> <p>② 전항 제 4 호 내지 제 6 호의 규정 에 의하여 동장을 면직시킬 경우에는 제 8 조의 규정 이외의 동장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p> <p>제 7 조 (동장의 징계 사유 및 징계종류)</p> <p>① 동장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할 때에는 이에 대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부지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였을 때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동장으로서의 출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직무수행 능력의 감소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p>② 징계의 종류는 최면과 견책으로 한다.</p> <p>제 8 조 (동장징계위원회) ① 구청 동장 징계위원회를 동장징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 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	---

③위원장은 구청장이 부위원장은 부청장이 각각 되며 위원은 각진, 파장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출장소 관한 동장에 대한 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위원중 1명이상을 당해 출장소 파장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이 규칙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구인사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9 조 [징계절차] ①동장의 징계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행한다.

②전항의 의결은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0 조 [사무위임] 이 규칙중 출장소 관한등에 대한 구청장의 권한은 당해 출장소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212 호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안 료 공 고

1. 서울특별시 고시제 64 호(71.10.12)로 실시 계획 인가를 받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의 준공을 도시계획법 제 85조 제1항 및 제 46조 제 3항의 규정과 전천부 고시 제 123 호(73.4.4)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관할구청·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모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3. 11. 16.

서울특별시장

1. 사업집행지 : 시내관악구신림동(151)
2. 사업 명 :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3. 준공면적 : 7,800 평
4. 사업시행자 : 시내 병동포구당산동 4가 1번지 이재화
5. 사업기간 : 착공 : 71.10.27.
준공예정일 : 73.9.30.
6. 준공년월일 : 1973. 11. 17
7. 준공도면 : 별첨인승도면 (생략)

사 령

◎ 1973.11.15.

성 북 지방행정기 박석용
 수도사업소 지서기

동부건설사업소 근무할 명함.

마 모 구 지방행정기 김영조
 수도사업소 지서기

성동구 근무할 명함.

중 로 구 지방행정기 조성환
 지서기

아동보호소 근무할 명함.

마 모 구 지방행정기 배은관
 지서기

성북구수도사업소 근무할 명함.

성 북 지방행정기 김현국
 수도사업소 지서기

서대문병원 근무할 명함.

성 동 구 지방행정기 구근필
 지서기

동대문구 근무할 명함.

서 대 문 구 지방행정기 이현일
 지서기

마모구수도사업소 근무할 명함.

동 대 문 구 지방행정기 송명규
 지서기

동대문구수도사업소 근무할 명함.

마 모 구 지방행정기 임충제
 지서기

운동장 근무할 명함.

운 동 장 지방행정기 실영숙
 지서기

성동구 근무할 명함.

중 로 구 지방행정기 심영철
 지서기

중구 근무할 명함.

완 산 구 지방행정기 송무용
 지서기

도시가스사업소 근무할 명함.

과 약 구 지방행정기 이현
 지서기

경행원 근무할 명함.

임 동 포 구 지방행정기 김석태
 지서기

종로구수도사업소 근무할 명함.

◎ 1973.11.16.

이영미

지방행정주사보시보이 김함.

1호봉을 금함.

부녀과 근무할 명함.

박용남

지방행정주사보시보이 김함.

1호봉을 금함.

용산과 근무할 명함.

김연희

지방행정주사보시보이 김함.

1호봉을 금함.

종로구 근무할 명함.

지방행정주사보시보에 입함.
1호봉을 금함.
영동출장소 근무할 명함.

오세창

성동구 지방행정주사 윤영숙
성북구 근무할 명함.
동대문구 지방행정주사보 이남제
자동차정비차 근무할 명함.

지방행정주사보시보에 입함.
1호봉을 금함.
양서출장소 근무할 명함.

도경숙

자동차정비차 지방행정주사보 고진규
영동포구 근무할 명함.
성북구 지방행정주사보 김철삼
양노원, 근무할 명함.

지방행정주사보시보에 입함.
1호봉을 금함.
공구 근무할 명함.

이봉화

성동구 지방행정주사 양용석
동대문구 근무할 명함.
용산구 행정주사 이영준
양서출장소 근무할 명함.

서대문병원 지방간조사
제주도 선출을 명함.

조기복

© 1973.11.20.

성동구산업과 행정주사보
도봉구 근무할 명함.

김동영

양주군 농촌지도사 조성원
농촌지도소
서울특별시 권입을 명함.

성동구산업과 지방행정보
성북구 근무할 명함.

김태수

농촌지도사에 입함.
5호봉을 금함.

총부과 지방행정사
용산구 근무할 명함.

손등수

농촌지도소 근무할 명함.

서대문구 지방행정사
천호출장소 근무할 명함.

박종주

유효호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입함.
1호봉을 금함.
서대문병원 근무할 명함.

여 은 회 명 함.

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임함.

마포구보건소 지방보건
(방역과장) 기

양 창 오

호봉을 금함.

동대문구보건소 방역과장여

영등포병원 근무할 명함.

보함.

영등포구보 지방보건 김 학 영
건소(방역 연구 과장) 임 구 과

동대문구보건 지방보건
소(방역과장) 기

이 중 화

마포구보건소 방역과장 직무대리물

영등포구보건소 방역과장여 보함.

서 울 특 별 시 장